

4.2.13 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

제정 2010. 11. 12.
개정 2012. 07. 26.
개정 2013. 11. 29.
개정 2018. 02. 28.
개정 2019. 08. 29.
개정 2022. 06. 2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교원임용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으로 전형방법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투명하고, 공정하며 합리적인 채용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형방법) 교원 공개채용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임교원은 서류심사(1차 기초심사 및 2차 전공심사)(이하 '1차 및 2차'라 칭한다), 공개강의 평가,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차 및 2차 서류심사는 통합할 수 있으며, 동일학기 2회차 이상 채용절차 등으로 채용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강의 평가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3.>
2. 외국인교수는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. <개정 2022.06.23.>
3. 전문교수는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.

제3조(응모 자격) 교원임용규정 제8조에 의한다.

제4조(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) 본 대학 교원초빙을 위하여 교원자격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위원회와 연구실적물을 심사하는 2차 서류심사위원회, 공개강의평가위원회, 면접시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.7.26., 2022.06.23.>

- ① 위원은 본 대학 교원 및 타 대학 교원 또는 산업체 관련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삭제 <2022.06.23.>
- ③ 삭제 <2022.06.23.>
- ④ 위원회별 3인 이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6.23.>
- ⑤ 서류심사위원회 1인 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한다. 단,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신규채용하는 교원의 채용심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7.26., 2022.06.23.>
- ⑥ 위원회의 행정업무는 교무처에서 진행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제5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서류심사(기초심사, 경력평정, 연구실적물심사)
2. 공개강의 평가
3. 면접시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

제2장 전형방법

제6조(기초심사) 모집대상 전공분야 와 지원자의 전공의 일치 등을 심사하고 <별첨 1>를 작성 하며 부적격자는 다음 전형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경력평정) 지원자의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을 <별첨 2>의해 평가하며, 10점 만점으로 하되 <별첨 2-1>의 기준에 의한다.

제8조(연구실적물 심사) ① 연구실적물의 양적심사는 최종학위논문(박사 200%, 석사 100%인정) 포함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을 <별첨 3>의해 평가 한다.

1.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등급

가. 박사학위 논문, 공인된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(A)

나.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 (B)

다. 석사학위, 전공관련 ISBN인증 저서(번역서, 편저 제외) (C)

② 연구실적물의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논문 과 대표논문을 <별첨 4>의해 평가한다.

제9조(공개강의) ① 각 학과에서 공개강의를 실시하며 공개강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과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3.>

② 공개강의 대상은 서류전형 및 우대가산점 상위 3배수 이내로 하되 연구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총장이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3.>

③ 공개강의 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 호와 같다. <개정 2022.06.23.>

1. 심사위원은 초빙학부(과)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(과)교원수가 3인 미만일 경우 총장은 관련학부(과)의 전공교원을 추가로 임명한다. <개정 2012.7.26.>

2. 삭제 <2012.7.26.>

3. 공개강의 시행 계획을 공개 강의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4. 공개강의 평가시 타 학부(과)교원 및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. <개정 2012.7.26.>

5. 공개강의 평가는 <별첨 5>의 한다.

제10조(면접 대상자) 면접대상자는 공개강의를 한자로 중에 한다. <개정 2018.02.28>

제11조(면접시험) ① 교원으로서의 국가관, 인격과 덕망, 학교발전기여 가능성, 지도력 등 종합적으로 <별첨 6>에 의해 심사하며, 위원은 총장, 부총장, 교무처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. 단, 위원 부재 시 총장이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2.7.26., 2022.06.23.>

1. 면접위원 배점은 위원장 A: 20점~18점, B: 17점~15점, C: 14점~12점, D: 11점 이하로 하고,

2. 기타 면접위원 배점은 A: 15점~13점, B: 12점~10점, C: 9점~7점, D: 6점 이하로 한다.

② 외국인교수의 면접시험시에는 해당 학과(부)장 등이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6.23.>

제12조(우대 가산점) 우대 가산점은 우대요소별 각 5점을 부여한다.

제 13 조(평점 배점)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.

1. 연구실적물 양적심사 : 40점
2. 연구실적물 질적심사 : 40점 <개정 2022.06.23.>
3. 경력평정 : 10점
4. 공개강의 : 20점
5. 면접시험 : 50점

제3장 기타사항

제14조(서류재심사) 전형위원 간 서류심사 평가 점수가 현저한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재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3.>

제15조(모집보류) 총장은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3.>

제16조(임용절차) 총장은 임용코자 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있을 때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 1> <개정 2012.7.26., 2013.11.29., 2018.02.28>

기초심사표

지원 학과		채용 분야		응시 번호		성명	
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	--

1. 연구실적물 및 채용분야 실무경력

200% 이상 또는 채용분야 실무경력()이상	200% 미만 또는 채용분야 실무경력 ()미만

2.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

4년 이상	4년 미만

3. 전공일치도

2개 이상 일치	불일치

4. 기타

학과 지정 사항 일치	불일치

5. 판정

적격	부적격

위와 같이 심사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	직 :	성 명	(인)
심사위원	직 :	성 명	(인)
심사위원	직 :	성 명	(인)

초당대학교총장 귀하

<별첨 2>

경력평정표

지원 학과		채용 분야		생년 월일		성명	
구분	기관명	산출기초	시수	기간	평점	비고	
연구경력							
교육경력							
기타경력							
계							

위와 같이 평정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	: (소속)	(직)	(성명)	①
심사위원	: (소속)	(직)	(성명)	②
심사위원	: (소속)	(직)	(성명)	③

초당대학교총장 귀하

경력평정기준

기간 (개월)	구분	배점	비고
	12개월 이하	1	
	13 ~ 24	2	
	25 ~ 36	3	
	37 ~ 48	4	
	49 ~ 60	5	
	61 ~ 72	6	
	73 ~ 84	7	
	85 ~ 96	8	
	97 ~ 108	9	
	109 개월 이상	10	

경력평정 평점기준 (10점)

- 경력평정은 교원임용규정 제30조에 의함
- 경력이 중복인 경우 하나만 인정함.
- 강사(시간강사) 경력은 학기단위(6개월 기준), 계절학기 강의는 제외함.

<별첨 3>

연구실적 심사 조서 (양적심사)

지원 학과		채용 분야		응시 번호		성명	
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	--

구분	논문제목	인정 등급	등급 점수㉠	저자수별 환산율㉡	채용분야일 치인정율㉢	환산점수 [㉠×㉡×㉢]	비고
최종학 위 논문							
연구 실적물							
환산점수 합계							
취득점 수							

- ※ 양적심사(등급별 점수 및 저자의 환산점수)는 첨부 심사기준에 의함.
- ※ 양적심사 전공일치인정율 50%미만 불인정
- ※ 약적심사의 최대 환산 (인정)점수는 최종학위논문 포함 400점임
- ※ 취득점수 = [개인별 환산점수 합 ÷ 최대 환산인정점수 400]×40

위와 같이 심사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장 : (소속)	(직)	(성명)	㉠
심사위원 : (소속)	(직)	(성명)	㉡
심사위원 : (소속)	(직)	(성명)	㉢

초당대학교총장 귀하

<별첨 3-1>

연구실적물 양적심사 (등급별 및 연구자의 환산점수)

논문편당 점수 = 가×나×다

가. 논문 등급

등급	A 박사학위, SCI급	B 등재지, 후보지	C 석사학위, 저서
평점	200	120	100

나. 연구자에 의한 환산율

연구자	1인	연구자 2인 이상 경우
환산율	100%	주저자, 교신저자 2/n+2, 공동저자 1/n+2
반영점수	1.0	

다. 채용분야와 일치율

구분	일치	유사	미흡
반영점수	1.0	0.7	0.5

<별첨 4>

연구실적 심사 조서 (질적심사)

지원 학과		채용 분야		응시 번호		성명	
항목	논문제목			연구의 창의성	연구의 체계성	학문 기여도	합계
학위논문 [박사 20점 만점]				(8 ~ 5)	(6 ~ 3)	(6 ~ 3)	
[석사 10점 만점]				(4 ~ 2)	(3 ~ 1)	(3 ~ 1)	
대표논문 [15점 만점]				(6 ~ 3)	(4 ~ 2)	(5 ~ 2)	
합계							
심사요지							

※ 심사항목(요소)별 각 최저 점수이상 최고점수이하로 평가

※ 대표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 일 경우 양적심사의 연구자에 의한 환산율적용

위와 같이 심사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 :(소속) (직) 성명 ㉠

초당대학교총장 귀하

<별첨 5>

공개강의 평가조서

지원 학과		채용 분야		응시 번호		성명	
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	--

평가항목		배점	심사점수	비고
강의준비	강의계획 및 자료의 충실성	4 (4 ~ 2)		
강의내용	내용의 체계와 심도 및 관련 지식수준 등	4 (4 ~ 2)		
강의방법 및 태도	강의 기술.발음 및 열성, 강의의 리드 및 자신감	4 (4 ~ 2)		
강의관리	시간배분, 이해확인	4 (4 ~ 2)		
질의응답	질문에 대한 대답의 논리성, 명확성	4 (4 ~ 2)		
합계		20		
기타 심사의견 (필요시 기재)				

위와 같이 심사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(소속)

(직)

(성명)

인

초당대학교총장 귀하

